

##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

<b>소송종류</b>	행정소송	<b>법원명</b>	인천지방법원
<b>사건번호</b>	2020구합○○○○○ [1심]	<b>사건유형</b>	기타
<b>원고</b>	○○○	<b>피고</b>	인천☆☆교육지원청교육장
<b>판결선고일</b>	[1심]2020. 11. 12. 원고승	<b>비고</b>	
<b>사건개요</b>	<p>○ 원고는 인천 중구에 소재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으로, 2019.9.5.부터 2019.9.10.까지 ☆☆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원고가 방과후과정비를 부적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.10.22. 부당수급한 24,885,630원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서를 받았음.</p> <p>○ 원고는 실제 유아에 대하여 7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2018.3.9. 오기(誤記)한 유치원 현황만을 이유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으며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, 방과후과정비는 유치원에 재원하는 원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,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피고가 실제 수익자도 아닌 원고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.</p>		
<b>주문</b>	<p>1. 피고가 2019. 10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방과후 지원비 24,885,630원의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.</p> <p>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</p>		
<b>판결이유 및 판단요약</b>	<p>○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</p> <p>- 이 사건 처분 당시 비록 처분서에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떤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,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.</p> <p>○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</p> <p>- 구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치원의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.</p> <p>☆☆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‘원아 지원’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구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호자들에게 그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이를 유아교육법 제27조에 의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으며, 보조금이 아닌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반환처분을 할 수 없음.</p> <p>구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가 2020. 1. 29. 법률 제16875호로 개정되었지만, 이 사건 개정 조항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이 사건 개정조항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0. 9. 25. 이후에 부정수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임.</p>		
<b>결론</b>	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